

<첨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다음 페이지)

아 래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보호조치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하는 근거

법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1조(보호신청사실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

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나)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보호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근거

법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
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
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
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다) 통일부 시설로의 이송을 연기할 법적 근거

시행령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
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
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
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